

의안번호	2220114
의 퇴 인	김승원의원
회 답 일	2026.8.14.
추계번호	26D3682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97조의2제4항(보완수사요구)	보완수사요구는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197조의3제8항(시정조치요구 등)	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,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알려주어야 함	의무규정
3	안 제244조의6(수사과정의 전자적 기록·등재 등)	수사공무원은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사건 관계인과 접촉하거나 진술 청취 시 그 정보, 압수·수색·검증 등 주요 수사행위의 실시 및 그 결과, 증거목록, 영상기록 등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·등재하여야 함	의무규정
4	안 제244조의7(압수·수색·검증 과정의 영상기록)	- 수사공무원은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, 건조물, 항공기, 선거내에서의 압수·수색·검증 집행의 개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촬영·녹화하여야 함 - 수사공무원은 피의자, 변호인 또는 압수·수색·검증을 받는 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과정을 촬영·녹화하여야 함 - 촬영·녹화한 영상기록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97조의2제4항(보완수사요구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97조의3(시정조치요구 등)	
3	안 제244조의6(수사과정의 전자적 기록·등재 등)	
4	안 제244조의7(압수·수색·검증과정의 영상기록)	

2. 상세 사유

□ 보완수사요구 방법 및 시정조치요구 등(안 제197조의2제4항)

- 개정안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함
- 또한,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,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알려주도록 함
- 이에 따라 송달료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의 내용만으로는 보완수사요구 건수, 피의자 신문 건수와 각 상황에서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이용 건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- 참고로, 2022~2026년 연도별 형사일반사건 송달료 예산은 다음과 같음

[표 2] 형사일반사건 송달료: 2022~2026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2	2023	2024	2025	2026
형사일반사건 송달료	5,360	5,518	5,777	5,777	4,853

자료: 대법원 확정예산 사업설명자료

□ 수사과정의 전자적 기록·등재 등(안 244조의6 및 안 제244조의7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수사공무원이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사건 관계인과 접촉하거나 진술 청취 시 그 정보 및 증거목록, 영상기록 등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·등재하도록 규정함
- 또한 수사공무원은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, 건조물, 항공기, 선거내에서의 압수·수색·검증 집행의 개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촬영·녹화하고 그 영상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함
- 이에 따라 영상녹화장치 구입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로 인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구매하여야 할 영상녹화장치 수,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기능 확대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진 바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- 참고로 2025년도 경찰청 예산에 따르면 경찰 바디캠 도입 단가는 88만원임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박은비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은비	02-6788-4831	ebpark@nabo.go.kr